

작성부서	생명보험협회 홍보부	손해보험협회 홍보부
책임자	부장 양재섭 (☎ 2262-6506)	부장 곽수경 (☎ 3702-8651)
담당자	팀장 이 훈 (☎ 2262-6636)	팀장 이웅노 (☎ 3702-8582)
배포일	2025.12.30.(화)	배포부서 생명보험협회 홍보부 (☎ 2262-6605) 손해보험협회 홍보부 (☎ 3702-8655)

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

주요 내용

1. 상생금융이 강화되고, 보험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됩니다.

- ① (저출산 극복지원 3종세트 출시) 출산, 육아기 가정 지원을 위한 어린이 보험료 할인, 보험료 납입 유예, 이자 상환유예 등 3종 지원세트가 시행됨 ('26.4월 예정)
- ② (분쟁소지 없는 단순민원 보험협회 처리) 단순질의 등 분쟁소지 없는 단순민원은 금감원에서 보험협회로 이송, 신속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됨 ('26.상반기 예정)
- ③ (간단보험대리점의 생명·제3보험 판매 허용) 기존 손해보험상품 판매만 가능했던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범위가 생명보험·제3보험으로 확대됨 ('26.1월)
- ④ (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 출시)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, 폭발, 감전으로 인한 대인·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됨 ('26.1월)

2.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.

- ① (사망보험금 유동화상품 全생보사 출시)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全 생보사로 확대 출시됨 ('26.1월)
- ② (사적연금 세제지원 강화) 종신까지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인하되고, 퇴직소득 20년 초과 연금수령시 감면율이 확대됨 ('26.1월)

1

상생금융 및 보험소비자 편의 향상

주요 내용	관련 근거	시행 시기										
<p>①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 출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출산,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①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, ②보험료 납입 유예, ③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를 도입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주요 내용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신청대상</td><td>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,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</td></tr> <tr> <td>①어린이보험 보험료할인</td><td>출산(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) 또는 육아 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 (최소 1년 이상) 가능</td></tr> <tr> <td>②보험료 납입 유예</td><td>6개월 혹은 1년(계약자 선택) 동안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유예 가능 * 보험료 납입유예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계약들은 대상에서 제외</td></tr> <tr> <td>③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</td><td>최대 1년 동안(계약자 선택)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유예 가능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주요 내용	신청대상	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,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	①어린이보험 보험료할인	출산(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) 또는 육아 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 (최소 1년 이상) 가능	②보험료 납입 유예	6개월 혹은 1년(계약자 선택) 동안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유예 가능 * 보험료 납입유예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계약들은 대상에서 제외	③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	최대 1년 동안(계약자 선택)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유예 가능	금융위 보도자료 (‘25.10.16.)	‘26.4월 (예정)
구 분	주요 내용											
신청대상	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,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											
①어린이보험 보험료할인	출산(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) 또는 육아 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 (최소 1년 이상) 가능											
②보험료 납입 유예	6개월 혹은 1년(계약자 선택) 동안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유예 가능 * 보험료 납입유예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계약들은 대상에서 제외											
③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	최대 1년 동안(계약자 선택)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유예 가능											
<p>② 분쟁소지 없는 단순 민원의 보험협회 처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감원이 접수·처리하던 민원 중 단순질의,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을 보험협회로 이송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 <p>※ 이송민원의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 후 시행 예정</p>	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2항 제11호	‘26.상반기 (예정)										
<p>③ 간단보험대리점의 생명·제3보험 판매 허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의 간단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상품만 판매가 가능하였으나, 판매채널 다변화 및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판매상품의 범위가 생명/제3보험까지 확대됨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간단보험대리점 개요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상품범위*) 생명, 손해, 제3보험(상해·질병) * 보험금 상한액 5천만원, 간병보험 제외 (영업범위) 간단보험대리점에서 판매·제공·증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보험상품만 판매 가능 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간단보험대리점 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상품범위*) 생명, 손해, 제3보험(상해·질병) * 보험금 상한액 5천만원, 간병보험 제외 (영업범위) 간단보험대리점에서 판매·제공·증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보험상품만 판매 가능 	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등	‘26.1.1.								
간단보험대리점 개요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상품범위*) 생명, 손해, 제3보험(상해·질병) * 보험금 상한액 5천만원, 간병보험 제외 (영업범위) 간단보험대리점에서 판매·제공·증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보험상품만 판매 가능 												

주요 내용	관련 근거	시행 시기
<p>④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 출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6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의 화재, 폭발, 감전으로 인한 대인·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**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전기차 충전사업자, 아파트 등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자 등 ** 보상한도 : (대인) 인당 1.5억원, (대물) 1사고당 10억원 - 일반적인 화재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의 커넥터가 과열 또는 전기적 이상으로 녹거나 변형되어 차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보상하여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 ※ '26.1.1부터 신규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	전기안전 관리법 제21조의3	'26.1.1.

2

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 지원

주요 내용	관련 근거	시행 시기
<p>①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全 생보사 출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란,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부분 유동화(자동감액*)하여 생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감액이란, 보장금액(가입금액)을 줄이는 대신 그에 해당하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 지난 10월 30일, 5개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우선 출시하였으며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6년 1월 2일부터는 전체 생보사(19개사*)에서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^(예정) * 대상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, IBK연금보험, 교보라이프 플래닛을 제외하고 모두 출시 	금융위 보도자료 (25.10.22.)	'26.1.2.

주요 내용	관련 근거	시행 시기																				
<p>[2] 사적연금 세제지원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의 경우,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(4%→3%) 퇴직소득을 20년 초과 연금수령시 감면 확대(감면율: 40→50%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현 행</th> <th colspan="2">개 정</th> </tr> <tr> <th>연금 수령연차</th> <th>원천징수세율</th> <th>연금 수령연차</th> <th>원천징수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년 이하</td> <td>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%</td> <td>10년 이하</td> <td>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%</td> </tr> <tr> <td>10년 초과</td> <td>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%</td> <td>10년 초과 <u>20년 이하</u></td> <td>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%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(신설)</td> <td><u>20년 초과</u></td> <td><u>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50%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(적용시기) '26.1.1.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</p>	현 행		개 정		연금 수령연차	원천징수세율	연금 수령연차	원천징수세율	10년 이하	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%	10년 이하	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%	10년 초과	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%	10년 초과 <u>20년 이하</u>	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%		(신설)	<u>20년 초과</u>	<u>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50%</u>	소득세법 제129조	'26.1.1.
현 행		개 정																				
연금 수령연차	원천징수세율	연금 수령연차	원천징수세율																			
10년 이하	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%	10년 이하	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%																			
10년 초과	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%	10년 초과 <u>20년 이하</u>	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%																			
	(신설)	<u>20년 초과</u>	<u>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50%</u>																			